

“환경문제 어설플 대하면 수출 못한다”

국제환경규제 관련 포탈솔루션 ‘N-CER’ 첫 구축

산 업자원부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빠른 대응을 유도하고자 국제환경규제 대응 포탈솔루션인 ‘N-CER(Network for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를 최근 구축,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전기·전자 등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EU, 미국 등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해 국가별, 규제별 ‘주요 환경규제정보’와 ‘규제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사 제품의 해당국 환경규제 준수여부를 사전에

전 세계는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각 국가별로
다양한 제품 환경규제를 제정·시행 중이다.

평가해 주는 ‘규제준수 사전평가 도구’를 포함하는 세계 최초의 포탈솔루션이며, 회원가입 및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EU의 WEEE(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RoHS(유해물질 사용 제한지침) 등을 비롯하여 세계 50개 지역 1,000여건의 국제 환경규제가 시행 중 이거나 시행 예정이다.(표 참조)

이들 환경규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무역체계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어, 국제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제품생산은 이제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제환경규제가 자사제품 생산 및 수출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3.5%만

이 환경규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50%가 환경규제 대응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정보부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국제환경규제대응센터’(전국대)를 설립하고, ‘N-CER’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국가별 환경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N-CER’이 제공하는 ‘사전평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자사제품의 수출 국가별 환경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규제대응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제 규제를 충족하는 제품생산 전략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N-CER’는 복잡한 환경규제로 인해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환경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자체 정보 네트워크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초기단계로 전기·전자에 대한 EU,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지역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을 구축한 상태이다.

우선 WEEE(2005년 8월 시행), RoHS(2006년 7월 시행)에 대응하여 전기·전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산자부는 업종 및 국가, 대상 규제를 2010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예정시기를 보면, 전기·전자는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자동차는 2006년에서 2007년까지, 화학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산업 전분야는 2009년에서 2010년까지이다.

기업들은 ‘N-CER’ (www.n-cer.com) 및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통해 보다 자세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

〈주요 국제 환경규제〉

지역	규제명	시행	해당분야	내용
EU	WEEE (폐전기전자처리지침)	'05.8.13 (수거시스템 구축) '07.1.1 (재생률 달성)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별로 '06.8.13까지 수거시스템 구축 - 생산자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제생 의무 · 대형가전, 자판기 : 80% (5%내 에너지 회수) · IT, 통신장비, TV, Video : 75% (10%내 에너지회수) · 소형가전, 조명전기장비, 완구 : 70% (20%내 에너지회수) · 가스방출램프 : 80%
	RoHS (유해물질 사용규제)	'06.7.1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 크롬, 카드뮴, 수은, PBB, PBDE 등 6개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
	ELV (폐차처리 지침)	'03.7.1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함유 금지. ※ 카드뮴은 '05.12까지 유예(Ni-Cd 배터리)
		'06.1.1 '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중량의 85% 재생(5%내 에너지회수) - 차량중량의 95% 재생(10%내 에너지회수)
	EuP (친환경 설계 지침)	'07.8.11	에너지사용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 -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친환경설계 유도 - CE 마크와 통합하여 시장진입 통제
	EURO II, III, IV (자동차 배기ガ스 규제)	II: '96.1.1 III: '00.1.1 IV: '05.1.1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ガ스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 - CO, HC, NOx, PM 배출량 및 연료증 유형 농도 규제
	IPP(통합제품 정책)	미정	산업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 목적이 공공정책 -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산업계 협력적 참여 및 시장메커니즘 중시
미국	proposition 65 (유해물질 함유제품 공시제도)	'86.11.4	산업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0여종의 발암물질 / 환경호르몬 관련물질 관리(유해물질 함유시 경고표지 의무 · 납 함유 300ppm 이상시 경고프로그램 준수 의무 · Proposition 65에 등재된 물질 식수원 배출 금지
	폐전자제품 재활용법	'04.7.1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 6가 크롬, 카드뮴, 수은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 ※ PBB와 PBDE의 경우 관련 주법에서 규제 - 제품 판매시 재활용요금을 소매가격에 포함 시켜 징수
	LEV I, II (자동차 배기ガス규제)	I: '94~'03 II: '04~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을 EV, SULEV 세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NMOG, CO, NOx, PM, HCHO에 대한 최대 허용기준 규정 - 일정 비율의 무공해차 판매 의무화
중국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미정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화학물질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화학물질의 정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승인 - 생산 또는 수입한 화학물질 리스트 작성, 공표 및 관련기술 법규의 제정 의무
	폐기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권리규칙(안)	미정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 - 제조사 및 소매업자의 비용 부담
	전기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	'07.3.1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및 기타국가가 지정하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 - 시장판매 이전에 시험분석을 통한 시장 인증제도 실시 및 라벨링 규정 포함
	CCC 강제인증 제도	'02.5.1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CCE마크와 CCC마크가 하나로 통합된 CCC마크로 변경 - '03.5부터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상품은 반드시 강제상품인증서를 보유하고 CCC마크를 표시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 가능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법	'05.1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중량의 85% 재생('02년 이후) - 차량중량의 95% 재생('15년 이후) - 소비자에게 폐차 재활용 비용 부과
	가전 리사이클법	'01.4.1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폐기전자제품 회수제생 의무. ※ 폐기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J-MOSS(특정화학물질함유표시제도)	'06.7.예정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대 유해물질(납, 크롬, 카드뮴, 수은, PBB, PBDE) 함유시 제품, 포장 등에 함유 표시 의무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규제	'03.5.30 (최종개정)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시 사전신고 의무화 - 특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로 분류하여 제조/수입/시용 등에 대한 규제

·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 & electronic equipment

· ELV: End-of-Life Vehicle Directive

· EuP: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

· IPP: Integrated Product Policy,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LEV : Low emission vehicle

·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J-MOSS : the marking of presence of the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재생(Recovery)은 재활용, 재사용, 에너지회수를 포함하는 개념임.